

회칙

제1장 총칙

제 1 조 명칭

본 클럽은 서원밸리컨트리클럽(이하 “클럽”이라 칭한다)이라 하고 영문표기는 “SEOWON VALLEY COUNTRY CLUB”이라 한다.

제 2 조 목적

본 클럽은 서원레저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칭한다)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꾀하고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소재지

본 클럽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서원길 333의 클럽하우스내에 사무소를 두며 필요한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2장 회원

제 4 조 회원의 종류

본 클럽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- 가. 명예회원
- 나. 특별회원
- 다. 정회원(개인및법인회원)
- 라. 외국인회원 및 해외회원
- 마. 연회원
- 바. 가족회원
- 사. 기타회원

제 5 조 명예회원

명예회원은 본 클럽 및 국가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추천한자로 한다.

제 6 조 특별회원

가. 특별 회원은 본 클럽과 골프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

회사가 그자격을 부여한 자로 한다.

나. 특별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서만 회원의 예우를 받는다.

제 7 조 정회원

정회원은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
제 8 조 외국인회원

외국인회원 또는 해외회원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본적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정함에 따라 입회를 승인한자로 한다.

제 9 조 기타회원

가. 연회원 및 가족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한다.

나.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.

제3장 회원운영 및 관리

제 10 조 입회

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.

제 11 조 입회금

가.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정회원 및 해외회원의 입회금은 회사에 거치하고 탈회 및 제명시에는 당초에 납부한 입회금의 원금만을 반환한다.

단, 천재지변 또는 회사경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예탁금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.

나. 해외회원의 입회금은 원화로 표시된다.

제 12 조 시설 이용 및 회비

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13 조 이용의 제한

천재지변 기타 회사가 경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14 조 자격의 제한

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명,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
가. 본 클럽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

- 나. 본 클럽의 회칙, 이용약관등 제규정과 골프에티켓을 위반한 경우
- 다. 회비, 기타의 납입의무를 3개월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
- 라. 회사가 필요로 하는 신상 변동사항의 통보를 1년 이상 지체한 경우
- 마. 기타 본 클럽의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
제 15 조 자격상실

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- 가. 회원증서 양도
- 나. 퇴회
- 다. 제명
- 라. 사망
- 마.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

제 16 조 회원권의 양도 양수

- 가. 회원권의 양도, 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나. 회원권의 양도, 양수, 법인회원의 지명인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가 정한 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퇴회

- 가. 퇴회를 희망할 경우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나.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회원이 퇴회를 희망하는 날 퇴회를 요청을 할 수 있다.
- 다. 회사가 퇴회 승인한 후에 입회금을 반환한다.

제4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

제 18 조 권리

- 가. 회원은 본 클럽의 시설물을 다른 이용자보다 우선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.
- 나. 회원은 본 클럽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등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 19 조 의무

- 가. 회원은 본 클럽의 회칙, 이용약관, 골프에티켓 등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나. 회원은 신상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다. 회원은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할시에는 회사가 정한 각종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.
- 라. 회원은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.

제5장 이사회

제 20 조 이사회

- 가. 본 클럽 회칙에서 이사회라함은 서원레저(주)의 이사회를 말하며 그 결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 정관에 의한다.
- 나.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상정되는 중요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21 조 운영위원회

-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한다.

제6장 경기규칙

제 22 조 경기규칙

-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.

제 23 조 로깅 룰 및 임시규칙

- 본 클럽의 로깅 룰의 제정, 개정, 경기규칙의 변경 및 일시 적용할 규칙은 운영위원회가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24 조 관습

-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 관습에 따른다.

부칙

- 가. 본 회칙의 개폐는 이사회 의결로서 행한다.
- 나. 본 회칙은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